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9월 30일

CUOMO 주지사, 성 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이 법률은 성 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어린이를 위해 성 범죄자의 친권을 제한합니다

새 법률은 지역 및 주 교정 시설 직원들을 위해 주 보호 명령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성 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2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률은 성 폭행의 결과로 어린이가 태어난 경우 유죄 판결된 성 범죄자의 친권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법률은 어느 재소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는지를 지역 및 주 교정 시설의 특정 직원들이 추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 보호 명령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합니다.

“본인은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뉴욕주의 능력을 강화할 두 법안에 사명하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성 폭행으로 인해 태어난 어린이를 위해 성 범죄자의 친권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모자를 가해자의 희롱, 위협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범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욕주의 교정 시설 직원들에게 그들이 감독하고 있는 재소자와 가석방자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우리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하고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의와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법안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성 범죄자의 양육권 및 방문권과 관련한 현재의 법률은 해당 어린이가 가해자의 성 폭행의 결과로 태어났을 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일급 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법적 절차의 대상인 어린이가 그 결과로 태어난 경우 입양 또는 사회복지 절차를 통보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문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제기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Korean

새 법률은 일급 또는 이급 강간, 아동을 상대로 한 일급 성행위 과정, 약탈적 성폭행 또는 아동을 상대로 약탈적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을 위해 기존 법률에 의거한 보호를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유죄를 선고 받은 성범죄자로부터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친족법 및 사회복지법을 수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법률은:

- 성폭행의 결과로 잉태된 아동이 유죄를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양육하에 놓이거나 또는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즉, 그러한 양육 또는 방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범죄자의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를 위한 입양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성범죄자에게 거부합니다.
- 범죄자의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 절차(가정 위탁, 후견권, 양육권)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성범죄자에게 거부합니다.

상원 다수당 연합 공동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성범죄자들이 공격이 발생한 오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 있는 허점을 매우고 성악탈자가 법원에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와 그 어린이들이 치유되고 자신의 삶을 추진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Amy Pau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우 종종 성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고발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문권 또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인은 이 허점이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괴물들이 그들이 공격한 여성을 다시 해치지 못하게 막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나머지 삶 동안 커다란 정서적 짐을 지닐 것이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것이 상기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또한 주 보호 명령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여 재소자나 가석방자들의 모니터링, 감독 또는 분류를 담당하는 지역 교정 시설 및 교정커뮤니티감독부(DOCCS)의 직원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하였습니다.

기록 관련 현재의 법률은 뉴욕주 경찰국장이 가정 폭력 사건에 발급된 모든 보호 명령 및 영장을 포함하여 기록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한 접근은 법원과 경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면 재소자의 프로그래밍과 석방 계획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과 크게는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의원 **Martin J. Gold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로서 본인은 **Andrew Cuomo** 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중앙의 전주적 기록 생성은 여기 앰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다수의 안전을 개선하고 우리 주민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Helene Weinstein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상식적 법률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